
Policy and Law Report _Vol.12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4 ~ 2022.2.6) -

February 7,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가상융합경제 주도를 위한 「차세대 연결망(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세상의 영토 개척을 선도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할 종합적인 미래 비전을 담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함 디지털 대전환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강점인 네트워크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고 미래 주도권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결망(네트워크)은 디지털 영토 개척을 선도하는 기마(騎馬) - 기술패권 경쟁의 필수전략기술로 선진국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주 본격화 ② 세계 최고 연결망(네트워크) 혁신 국가 도약을 향한 선제적 대응 방안 수립 추진 - 테라(Tera)급의 초성능·초공간·초지능 등 초격차 기술로 세계 시장 선도 - 구내·백본망* 등 기초를 탄탄히 하고, 하늘·바다까지 촘촘한 접근 환경 조성 - 핵심부품부터 서비스까지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튼튼한 생태계 조성 * 저속의 여러 하위 망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분산된 통신장치들을 통합하기 위한 최상위 통신 네트워크를 말함 ③ 통신사·제조사·학계 등 차세대 연결망(네트워크) 발전 방향 제시 - 통신사, 산업 생태계 협력으로 기술 진화 대응과 신규 서비스 확장 추진 - 제조사, 차별화된 해결책 개발을 통해 국가 기간망인 연결망(네트워크) 역할 확대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추진방향(안)>	2022-01-25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소부장 표준화 포럼」 개최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1년간 펼쳐 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표준연계 사업’ 성과를 공유함 과제 기획과정에서 표준동향 조사를 통해 표준화 효과가 기대되는 5개 소부장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조속히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쳐 표준화 동향을 제공하며 국제표준(안) 제안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반도체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의 연구진들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추진 방안을 발표함.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아라미드 섬유, 산화이트륨) 및 유럽(극저온 단열소재, 생분해성 PP/PET) 주도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화로 우리나라 우수기술(이차전지, 스마트섬유 센서 등)의 글로벌 신뢰성이 확보되어 해외 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 기대됨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th>기술개발과제</th><th>표준화 추진 과제</th></tr> </thead> <tbody> <tr> <td>반도체</td><td>① 대기 플라즈마 용사 코팅용 산화이트륨 기반 내 플라즈마 원료소재 제조 기술</td><td>X-선 회절을 이용한 YAG 분말 내 이차상 평가 방법</td></tr> <tr> <td rowspan="2">디스플레이</td><td>② 초고속 통신 저유전 프리프레그 및 CCL제조기술</td><td>1GHz에서 0.004 이하 저유전 손실 CCL 소재 규격</td></tr> <tr> <td>③ 화면크기 10 인치급 초박형 유리의 건식 이온교환 기반 연속식 화학강화 공정기술</td><td>폴딩 시 변형동작에 의한 초박형 유리의 내구성 측정 방법</td></tr> <tr> <td>전기전자(이차전지)</td><td>④ 미래 친환경 중대형 이차전지(EV, ESS)용 화재억제형 고안전성 모듈 개발 및 안전성</td><td>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열폭주 전이 시험방법</td></tr> <tr> <td>기계금속</td><td>⑤ 고압수소용기용 합금강의 압력 용기 적용 mock-up 제작 및 표준화 개발</td><td>고강도 고압용기 제조를 위한 수소취성 시험 및 수소분석 방법</td></tr> <tr> <td rowspan="4">화학섬유</td><td>⑥ LNG선 화물창용 단열 패널 제조 기술 개발 및 표준화</td><td>단열 패널 동적 강도</td></tr> <tr> <td>⑦ 극한성능 공중합 아라미드섬유 개발</td><td>섬유-고무 복합재의 피로수명</td></tr> <tr> <td>⑧ 생분해도 60%이상 생활산업용 생분해성 PET계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td><td>섬유소재의 환경영향 평가</td></tr> <tr> <td>⑨ 생분해성 PP 수지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내구성 섬유소재 및 제품</td><td>섬유소재의 물리적 열화도 평가</td></tr> <tr> <td></td><td>⑩ 운동생체 및 동작 신호 정보 수집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웨어용 섬유융합센서</td><td>전도성, 압전 소재에 적용 용어에 대한 표준화</td></tr> </tbody> </table>	분야	기술개발과제	표준화 추진 과제	반도체	① 대기 플라즈마 용사 코팅용 산화이트륨 기반 내 플라즈마 원료소재 제조 기술	X-선 회절을 이용한 YAG 분말 내 이차상 평가 방법	디스플레이	② 초고속 통신 저유전 프리프레그 및 CCL제조기술	1GHz에서 0.004 이하 저유전 손실 CCL 소재 규격	③ 화면크기 10 인치급 초박형 유리의 건식 이온교환 기반 연속식 화학강화 공정기술	폴딩 시 변형동작에 의한 초박형 유리의 내구성 측정 방법	전기전자(이차전지)	④ 미래 친환경 중대형 이차전지(EV, ESS)용 화재억제형 고안전성 모듈 개발 및 안전성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열폭주 전이 시험방법	기계금속	⑤ 고압수소용기용 합금강의 압력 용기 적용 mock-up 제작 및 표준화 개발	고강도 고압용기 제조를 위한 수소취성 시험 및 수소분석 방법	화학섬유	⑥ LNG선 화물창용 단열 패널 제조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단열 패널 동적 강도	⑦ 극한성능 공중합 아라미드섬유 개발	섬유-고무 복합재의 피로수명	⑧ 생분해도 60%이상 생활산업용 생분해성 PET계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섬유소재의 환경영향 평가	⑨ 생분해성 PP 수지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내구성 섬유소재 및 제품	섬유소재의 물리적 열화도 평가		⑩ 운동생체 및 동작 신호 정보 수집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웨어용 섬유융합센서	전도성, 압전 소재에 적용 용어에 대한 표준화	2022-01-25
분야	기술개발과제	표준화 추진 과제																													
반도체	① 대기 플라즈마 용사 코팅용 산화이트륨 기반 내 플라즈마 원료소재 제조 기술	X-선 회절을 이용한 YAG 분말 내 이차상 평가 방법																													
디스플레이	② 초고속 통신 저유전 프리프레그 및 CCL제조기술	1GHz에서 0.004 이하 저유전 손실 CCL 소재 규격																													
	③ 화면크기 10 인치급 초박형 유리의 건식 이온교환 기반 연속식 화학강화 공정기술	폴딩 시 변형동작에 의한 초박형 유리의 내구성 측정 방법																													
전기전자(이차전지)	④ 미래 친환경 중대형 이차전지(EV, ESS)용 화재억제형 고안전성 모듈 개발 및 안전성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열폭주 전이 시험방법																													
기계금속	⑤ 고압수소용기용 합금강의 압력 용기 적용 mock-up 제작 및 표준화 개발	고강도 고압용기 제조를 위한 수소취성 시험 및 수소분석 방법																													
화학섬유	⑥ LNG선 화물창용 단열 패널 제조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단열 패널 동적 강도																													
	⑦ 극한성능 공중합 아라미드섬유 개발	섬유-고무 복합재의 피로수명																													
	⑧ 생분해도 60%이상 생활산업용 생분해성 PET계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섬유소재의 환경영향 평가																													
	⑨ 생분해성 PP 수지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내구성 섬유소재 및 제품	섬유소재의 물리적 열화도 평가																													
	⑩ 운동생체 및 동작 신호 정보 수집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웨어용 섬유융합센서	전도성, 압전 소재에 적용 용어에 대한 표준화																													

부처	내용	일시
환경부	• 「<u>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u>」 마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 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확인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매립장 잔여 매립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으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됨 * 폐기물 발생량('19.3월 → '20.3월) : (폐비닐류) +10.0% / (폐플라스틱류) +18.1% ** 폐기물 처리단가(원/톤) : (소각) 172천원('15년) → 285천원('19년) / (매립) 55천원('15년) → 219천원('19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 도입 ②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③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유인 기제 도입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④ EPR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강화 * EPR 제도 :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포장재)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 부여 ⑤ 재활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 등이 있음	2022-01-27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힘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임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실태 사업장도 실태조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 재개 ○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 ○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 ○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③ 실직, ④ 파산, ⑤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 ○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 ○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 방지	2022-02-03

부처	내용	일시
	○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면 설립·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 - 아울러 용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 * (분양공고) 분양대금 납부방법(납입계좌), 용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하자확인), 관리단 설립내용 등 ** (분양계약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해당 시), 연체이자 최대한도, 지체상금 지급방식 등 ② 분양시장 질서 확립 ○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 의무화 ○ 허위·과장 광고 근절 -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 ③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 - 또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 *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연면적 10%이상 증감 등 ** 연면적 3%내 구조변경, 면적 변경 없는 건축물 배치 조정, 연면적 10%미만 증감 등 ○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 도입	

부처	내용	일시
금융 감독원	•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① 법과 원칙 기반, ②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 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검사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② 상시 감시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정보교류 파트너십 구축 및 자체 감사 기능 활용 확대 ③ 검사 결과 처리의 투명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이 있음	2022-01-2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2.3.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됨 이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 수의계약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을 추가하고, 결손처분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유예액의 범위에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액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022-01-28
산업통상 자원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8.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2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구매목표제 이행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공간을 확충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제3조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등으로 정함	2022-01-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제18조의4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구체화함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확대 (제18조의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해당 시설이 보유한 주차단위구획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각각 낮춤으로써 의무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안 제18조의6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를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기준 (제18조의7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를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보완 (제18조의8제1항) - 현재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에 필요한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시간 산정의 기준점을 "충전 시작시점"에서 "주차시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에 추가함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개방 대상시설 (제18조의9 신설)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그 시설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도록 하되, 그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시정명령 시 시정기간 (제18조의11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 그 시정기간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⑨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18조의12 신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정함 ⑩ 과태료 부과대상의 유연화 (별표 제1호다목) -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보유 전용주차구역의 수가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등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이 그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등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⑪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 (부칙 제2조)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시점을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27일까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27일까지로 각각 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26년 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2022.8.4. 시행 예정)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미국은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면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중국도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등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제2조) ②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제5조부터 제7조까지) ③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제9조) ④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2022-02-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⑤ 해당 기술이 국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제11조) ⑥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⑦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⑧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특례를 규정함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⑨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⑩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이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⑪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31조 및 제34조) ⑫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⑬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연대협력모델을 발굴·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22.2.3. 시행)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디자인 심판은 특허·상표 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바, 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특허 및 상표 심판 절차와 통일하기 위하여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 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심판 청구서 외의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2-02-03
	• 「상표법 일부개정」 (2022.2.4. 시행)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는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섭시키려는 것임 또한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②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 (제54조·제57조·제68조 등) ③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55조의2 신설)	2022-02-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28. 시행)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4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 이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자율협력주행 인증·검증 업무의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 인증서의 폐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수행 업무 (제23조 신설)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원, 인증 관련 기술·제도 연구의 지원,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 검토, 자율협력주행 인증·검증 업무의 장애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처리·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 및 별표 1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과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인력을 12명 이상 확보하고,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액 100억원 이상의 재정능력이 있으며,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와 인증서의 생성·발급·관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중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③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6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과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인력을 12명 이상 확보하고,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액 100억원 이상의 재정능력이 있으며, 정보의 이상 유무 탐지·판단과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중에서 검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022-01-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④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제27조 신설) -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에서 이상행위정보*로 예상되어 통지된 정보를 수집·판단하고, 이상행위정보로 최종 판단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검증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을 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및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함 * 이상행위정보: 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정보 ⑤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 (제31조 신설) -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장애예방·대응계획에는 장애 관리·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예방 점검활동 계획,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관리센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⑥ 인증서를 폐지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제32조 신설) -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고하도록 하고, 가입자에게 자동차의 모니터나 음성 출력 장치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며,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⑦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5조 신설)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정함 -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2.3. 시행)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여행 또는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나 용역을 추가하는 한편, 할부거래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100분의 25에서 연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이나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022-02-03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2021. 10. 19 공포, 2021. 4. 2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제2조 및 제3조)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②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개최절차,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③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산업간 교류 및 융합기반 구축,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데이터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및 산업간 교류·융합기반 구축 시책 마련 시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구체화함 ④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보안대책 (제11조 및 제12조) -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안심구역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⑤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가치평가 신청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가치평가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가치평가 절차, 가치평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가치평가 정보의 예외를 구체화 함 ⑥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및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아니되는 사업자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데이터 유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데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 및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함	2022-01-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 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기관 지정 등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품질관리 사업을 구체화함 ⑧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 자격 및 교육과 등록 신청 등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데이터거래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력 · 자격 및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 · 시간을 구체화하고,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함 ⑨ 창업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실태조사의 범위 · 방법, 보조금 지급 등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창업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 절차와 지원하는 비용 등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 공표 및 보조금 · 장기대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⑩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 및 협회의 설립 (제31조 및 제32조) -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협회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사업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함 ⑪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정부의 구성 · 운영 등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⑫ 권한의 위임 · 위탁,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과태료의 부과 (제40조부터 제4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 의견 제시기간 : 1/27(화)~3/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로 제출	
환경부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바젤협약 금지 개정안(유해폐기물의 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로의 수출금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 포괄 수출입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2022-01-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①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신고)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 (안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2제2항) - 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한꺼번에 수출입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10일 전까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 ② 바젤협약 금지개정안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금지 규정 명확화 (안 제18조의2) - 바젤협약 수출금지 개정안(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의 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 금지) 조문에 맞춰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1/25(화)~3/7(월)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생활폐기물과)로 제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1회용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 물티슈를 1회용품에 추가하여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기물부담금 제외대상 추가 및 면제대상 조정 (안 제10조)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플라스틱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규제 해소 및 법률과 시행령의 중복 규정사항 해소 ②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서 PVC 재질 포장재를 제외 (안 제18조) -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제도가 아닌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일괄 관리 ③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 (안 별표1)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서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④ 종이팩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 (안 별표6) - 종이팩 포장재의 종류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기준 비용을 각각 규정 ※ 의견 제시기간 : 1/25(화)~3/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2-01-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 실적으로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한 것이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시행에 필요한 의무량 산출기준, 재활용단위비용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활용의무량 감경대상을 현행 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에서 모든 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실적으로 확대 (안 제15조의2제3항·제4항) ②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 (안 제15조의2제6항·제7항, 별표 3의4) ③ 태양광 패널 회수의무량 산출공식을 현행 전자제품(49종)과 별개로 마련하고,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매입량을 현행 총량에서 제품군별로도 고시하도록 개정 (안 제15조의6제2항·제4항) ※ 의견 제시기간 : 2/4(금)~3/16(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2-02-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공모의무에 예외를 적용하는 주주범위를 정비하고, 시장 성장에 따라 협회의 개인투자자 교육 및 리츠업무 종사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투자자 인식 제고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그 밖에 인가취소의 예외규정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식 공모의무 예외 적용 대상기관 정비 (안 제12조의3제14의2호 및 제33조제1항제22의2호 신설) - 2015년 근거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를 주식 공모의무 예외주주에 포함 ② 부동산 자산 구성비율 산정방식 개선 (안 제27조제3항) -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유입되는 임대보증금을 자산의 구성 비율 산정시 총 자산에서 제외 ③ 관련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28조) -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 변경 ④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 변경 개선 (안 제40조제1항제2호)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을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에서 ‘매 분기의 말일’로 변경 ⑤ 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의 예외 대상 추가 (안 제43조의2) - 자산관리회사가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자기자본 유지의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적 인가취소에 이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⑥ 협회 교육업무 및 인력 관리업무 확대 (안 제47조의3) - 자율규제 관련 업무,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 교육 업무 등 리츠협회 업무 확대 ⑦ 협회업무 위탁규정 개선 (안 제49조의7)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등록확인 시 필수 요소인 사전교육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리츠협회에 전문인력 등록·변경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결과보고 의무 부여 ※ 의견 제시기간 : 1/28(금)~3/1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	2022-01-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규정된 제조창업 부담금 면제대상(제조창업자)과 지자체 등 현장에서 적용하는 대상(공장설립 창업자)이 달라 대상 일치를 위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22.8.2)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22.12.31)의 일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담금 면제 대상의 명확화 (법률 제18661호 안 제23조제2항) - 부담금 면제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자”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개정 ② 존속기한 연장 (법률 제18661호 부칙 안 제2조)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의 존속기한은 '27.8.2(5년)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25.12.31(3년)로 연장 ※ 의견 제시기간 : 1/28(금)~3/10(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로 제출	2022-01-28
공정거래 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 (안 제13조의5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의 부담 비율,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②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안 제13조의5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을 광고는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2022-01-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동의 방법 (안 제13조의5제3항) - 가맹본부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기타 합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④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5) -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의견 제시기간 : 1/18(화)~2/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로 제출	
금융위원회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제4조의2제3항) -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일정수준이상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② 은행 국외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완화 (제24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신설) -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제재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 ③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 (별표 3 제28호의4·제33호의2·제34호의2·제46호의2 신설, 별표 3 제43호)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에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업무 등을 추가 ※ 의견 제시기간 : 2/3(목)~3/1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	2022-02-0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음 이에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64조의2 신설)	2022-01-2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 2020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률은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714명)가 발생했고, 5인 미만 35.4%(312명), 5~49인에서 45.6%(45.6%)가 발생하였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그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설비 등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이에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되 정부에 중대재해예방기금을 마련·운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재원을	2022-01-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마련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양형 절차 특례, 직무유기죄를 범한 공무원 처벌, 법정형의 하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과 이사를 추가함 (안 제2조) ②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이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③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함 (안 제4조) ④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⑤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안 제6조) ⑥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⑦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함 (안 제13조) ⑧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함 (안 제14조) ⑨ 손해배상 책임을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 등의 재산상태를 삭제함 (안 제15조) ⑩ 정부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원기금의 마련 및 운용함 (안 제16조) 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함 (안 제17조) ⑫ 법무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 (안 제18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법제사법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등과 같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ESG경영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주주총회 구조 아래에서 소수주주가 ESG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3%)하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63조의2, 안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제542조의16 신설)	2022-01-27
	•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12인)」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②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2022-01-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12조) ④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13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안 제14조) ⑥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⑦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을 명시함 (안 제18조 및 제19조)	
정무 위원회	• 「<u>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u>」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금융 관련 개별법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금리가 높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필요한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9 신설 등)	2022-01-24
	• 「<u>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u>」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함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022-01-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가상자산거래가 만연해 있고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려는 것임 (안 제87조의6제1항제7호·제87조의17·제87조의18·제87조의20 신설 등)	2022-01-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상속공제 요건과 관련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가업으로 인정되는 주된 업종 요건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가업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022-01-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안 제18조제2항제1호) ②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안 제18조제6항) ③ 자산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안 제18조제6항제1호) ④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함 (안 제18조의2 신설)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0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의무 부과 조항에서 대중골프장을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라고 규정(제14조)하고 있음 위 법 조항 및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용자 우대 등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지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 골프장업 분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제10조의2 신설, 제14조·제15조·제21조·제30조·제32조 등)	2022-01-2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료전지 발전의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에서 개질수소를 만들어낼 때에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개질수소의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천연가스 요금 제도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 신설)	2022-01-24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세운송의 신고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에 관하여 「관세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61조 단서 신설)	2022-01-2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2/1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5호 발간	
국회도서관	2/8(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3호 발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독일 입법례	
	2/9(수)	금주의 서평 - 법정에 출두한 인공지능	
	2/10(목)	「현안, 외국에선?」 제29호 발간 -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조사처	2/7(월)	「이슈와 논점」 제1922호 발간 - 국회의원 임기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	
	2/8(화) 14:00	「전문가 간담회」 -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과제 - 하경준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2/11(금) 15:00	「전문가 간담회」 - 제2차 차기정부 교육정책 이슈와 과제 연속간담회 - 정순원 박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연구원	2/7(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8호 발간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별첨1] 제393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2/9(수) 10:00	전체회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결위	2/7(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및 심사 (종합정책질의)
	2/8(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2/9(수) 13:00	예산안 등 조정소위	추경안 심사
행안위	2/7(월) 10:00	법안1소위	안건 심사
기재위	2/7(월) 14:00	예산결산 심사소위	추경안 심사
	2/8(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산자위	2/7(월) 11:00	예산결산 심사소위	추경안 심사
	2/7(월) 소위 산회후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복지위	2/7(월) 10:1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등 소위 산회후 추경안 의결
	2/7(월) 14:00	예산결산 심사소위	추경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7(월) 14:00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및 인프라 강화 방안 - 한반도평화협력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김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2/7(월) 14:00	대전·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토론회	박완주, 이상민, 박범계 의원실 외	국회도서관 강당
2/8(화) 14:00	2050 탄소중립 달성 저에너지형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 방안 국회토론회	윤준병 의원	의원회관 1소회의실
2/8(화) 14:00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정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2/9(수) 14:00	2022 외교안보 컨퍼런스 : 경제안보	조태용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0(목) 14:00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이광재, 강병원 의원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2/11(금) 14:00	2022 외교안보 컨퍼런스 : 인간안보 vs 국가안보	조태용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2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1/28(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4호 발간	
국회도서관	1/24(월)	「최신정책정보·국내」 제93호 발간 - ‘코로나19 이후 고용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등 국내 정부 기관, 공공기관 및 싱크탱크 등 최신 주요정책, 현안정보 수록	
	1/25(화)	「현안, 외국에선?」 제28호 발간 - 최근 모병제 논의에 대응하여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1/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2호 발간 -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	
	1/25(화)	「현안입법 알리기」 발간 - 국회의원 · 지방선거 피선거권 18세로 하향	
입법조사처	1/26(수) 07:30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	ZOOM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5(화) 10:00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윤영찬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6(수) 10:00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	노웅래, 강훈식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